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15
----------	------

발의연월일 : 2021. 3. 11.

발의자 : 이병훈 · 임호선 · 김승원
남인순 · 기동민 · 이재정
이성만 · 오영환 · 임오경
박정 · 서영교 · 김민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생 략) <u><신 설></u>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